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9. 3.

제23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
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행정문화국 마을자치과)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22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8. 24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8. 24.

2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되어 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통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를 진작하고 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‘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통장자녀’ → ‘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통장자녀’로 확대 (안 제1조)
- 나.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‘공납금 전액’ → ‘예산의 범위 내 구청장이 정하는 바’로 조정 (안 제7조)

다. ‘국가,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 구청장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학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. 이 경우, 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’ 신설 (안 제7조제2항)

라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이유

본 개정 조례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(자사고 등 일부 제외) 학비가 무상으로 변경되어 통장 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대학생 자녀로 장학금 대상을 확대 하여 통장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○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‘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통장자녀’

→ ‘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통장자녀’로 확대 (안 제1조)

○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‘공납금 전액’ → ‘예산의 범위

내 구청장이 정하는 바'로 조정 (안 제7조)

- '국가,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 구청장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학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. 이 경우, 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' 신설 (안 제7조제2항)

다. 검토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 관련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개선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임.
-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들의 공지와 자부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성이 인정됨.
-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되 장학금의 중복여부 및 타구 지급현황 등 지급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
붙임 : 1.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 1부

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

□ 통장현황

(2021.8.1.기준)

구 분	계	가산	독산1	독산2	독산3	독산4	시흥1	시흥2	시흥3	시흥4	시흥5
정 원	386	33	60	33	46	28	56	33	22	34	41
현 원	381	32	58	33	46	28	55	32	22	34	41
공 석	5	1	2	-	-	-	1	1	-	-	-

□ 그간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

- 지급대상 : 고등학생(통장1인 1자녀)
- 기준금액 : 공납금 전액
 - 일반고(자사고) : 1인당 분기 469,400원 이내(연 1,877,600원)
 - ※ 기준금액 초과 시 예산의 범위(1인 1,877,600원) 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
- 지급시기 : 연 2회(5월, 9월)
- 지급현황(최근 5년)

구 분	지급인원 수	지급금액(천원)	비 고
계	54	83,199	
2020년	9	6,312	
2019년	13	15,197	
2018년	8	13,239	
2017년	12	20,245	
2016년	12	28,206	

※ 2021년은 고등학교 전학년 학비 무상 시행에 따라 지급내역 없음.